

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9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원일 : 2000. 10.

제 출 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“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”을 조성·적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의 자활·자립 도모하고,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는 등,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기금의 운영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의 재원으로 조성함(안 제3조).
- 기금의 사용은 20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,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함(안 제4조).
- 기금에서 사용·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장애인 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및 재활지원사업,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업, 기타 장애인복지향상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(안 제4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 첨

- 장애인복지법 제 9 조·제 53 조

- 지방자치법 제 133 조

○지방재정법 제 110 조

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 사업 : 해당없음

사전 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* 입법예고 : 2000. 8. 14. ~ 9. 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,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익금

제4조 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은 20억원이상의 금액이 조성된 후,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.

② 기금에서 사용·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..

1. 장애인단체(보건복지부장관 인가)의 육성·지원사업
2.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·자립 지원사업
3.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
4.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 등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과 시의원,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,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·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금의 지원대상자·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

② 정기회는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

1. 기금운용관 : 장애인복지담당국장

2. 기금출납원 : 장애인복지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

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4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내용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 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	소관 실.과	사회여성과
입 안 자	실.과장 직위.성명	사회여성과장 임 영 선	
	담당 직위.성명	사회복지담당 변 한식	
	담당자 성명.전화	우현종 (행정2862)	

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10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1. 7.
제 안 자 : 경제·사회위원장외

1. 수정이유

- 기금지원대상 부수사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아 한정할 필요가 있고,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다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4조의 제목“(기금의 사용)”을 “(기금의 사용 및 용도)”로함.(안 제4조)
- 기금에서 사용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“각호의 사업과 이에 부수 되는 사업으로 한다”를 “각호의 사업으로 하고,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”로 함.(안 제4조 제2항)
-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구성위원회에서 “시의원”을 삭제함. (안 제5조)

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사용)”을 “(기금의 사용 및 용도)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각호의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”를 “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,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제5조 제3항 중 “장애인복지담당국장과 시의원”을 “장애인복지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<u>제4조(기금의 사용)</u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기금에서 사용·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<u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u>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과 시의원,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,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~⑤(생략)</p>	<p><u>제4조(기금의 사용 및 용도)</u></p> <p>①(원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 각호의 사업으로 하고,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~4.(원안과 같음)</p> <p><u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u></p> <p>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③..... 장애 인복지담당국장.....</p> <p>(4)~⑤(원안과 같음)</p>